

대법원 2024도256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경상북도의회의원인 피고인이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민 및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·단체에게 기부행위를 하고(기부행위 금지·제한 위반), ②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였다(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)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

대법원 2부(주심 대법관 이동원)는, **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,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으로 인한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**(① 기부행위 금지·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: 무죄, ② 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: 일부 유죄, 일부 무죄)하였음(대법원 2024. 4. 12. 선고 2024도2568 판결)

1. 사안의 개요

가. 사건의 개관

▣ 당사자의 지위

- 피고인은 2022. 6. 1.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의회의원 성주군 선거구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임

▣ 공직선거법

-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의 장·정당의 대표자·후보자(후보자

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)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(공직선거법 제 113조 제1항) ➡ 기부행위 금지·제한

-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) ➡ 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

나. 공소사실의 요지

▣ 기부행위 금지·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(➡ 제1심 **무죄**, 원심 **무죄**)

- 피고인은 2019. 9. 2.경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수건 1,000장을 '제2회 성주군 농업인학습조직체 한마음다짐대회'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및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배부하여 기부행위를 함
- 피고인은 2020. 7. 10.경 시가 35만 원 상당의 수건 100장을 '성주군 노인회' 연수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및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배부하여 기부행위를 함

▣ 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(➡ 제1심 **무죄**, 원심 일부 **유죄**, 일부 **무죄**)

-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, 선거기간 중인 2022. 5. 19.경부터 2022. 5. 26.경까지¹⁾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현금 합계 2,500만 원 [차량 트렁크 바닥에 100만 원(고무줄로 묶여있는 5만 원 권 20매 1묶음), 그 옆에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종이가방에 1,100만 원(고무줄로 묶여있는 5만 원 권 20매 11묶음), 조수석 앞 콘솔박스에 300만 원(농협 띠지로 묶여있는 1만 원 권 100매 3묶음), 조수석 위 손가방에 1,000만 원(고무줄로 묶여있는 5만 원 권 20매 2묶음, 새마을금고 봉

1) 사전선거일은 2022. 5. 27.이고, 본선거일은 2022. 6. 1.이었음

투 안에 소분된 5만 원 권 20매 5묶음, 묶여 있지 않은 5만 원 권 20매 3다발))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량에 실은 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성주군 일원을 이동하여 금품을 운반함

2. 소송경과

▣ 제1심 : 전부 무죄

▣ 원심

● 범죄일람표 연번 23²⁾ 기재 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➡ 유죄

■ 벌금 1,000만 원

● 기부행위 금지·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및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22 기재 각 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➡ 검사 항소기각

● 원심의 유·무죄 판단 이유

■ 범죄일람표 연번 23 기재 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- 유죄

·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및 그에 수반한 압수수색의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,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있음

· 이 사건 현금의 소분 형태 및 피고인의 지위,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소분하여 차량에 둔 이유는 선거인 매수 등을 통한 당선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

·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기간 중인 연번 23 기재 시점(2022. 5. 26. 23:21경)에 ‘당선될 목적’을 가지고 차량 내부에 이 사건 현금을 보관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현금을 운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

2)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직전인 2022. 5. 26. 23:21

- 기부행위 금지·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- 무죄 :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각 수건 기부행위 당시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'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'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
-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22 기재 각 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- 무죄 :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각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분된 형태의 현금 전부를 차량에 보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
- 유죄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고하고, 무죄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고함

3. 대법원의 판단

가. 쟁점

- ▣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정한 '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'에 해당하는지 여부
- ▣ 현행범인 체포의 위법성 여부
- ▣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

나. 판결 결과

- ▣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(원심 수긍)

다. 판단 내용

- ▣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(원심의 무죄판단 부분)
 -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및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22 기재 각 당선 목적 금품운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,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정한 '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'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

▣ 피고인의 상고이유 관련(원심의 유죄판단 부분)

-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23 기재 당선 목적 금품운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,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위반죄의 성립 및 죄수관계, 증명책임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

4. 피고인의 지위

- ▣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,0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,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의원직을 상실함

[공직선거법]

제18조(선거권이 없는 자)

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.

3. **선거법**, 「정치자금법」 제45조(정치자금부정수수죄) 및 제49조(선거비용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·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(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제129조(수뢰, 사전수뢰) 내지 제132조(알선수뢰)·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알선수재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,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(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)

② 제1항제3호에서 “선거법”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「국민투표법」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.

제19조(피선거권이 없는 자)

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.

1. 제18조(選舉權이 없는 者)제1항제1호·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

[지방자치법]

제90조(의원의 퇴직)

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.

2. **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**(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)